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17호
2026. 1. 5.(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929호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4
제9930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9931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9932호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1
제9933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993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9935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9936호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9937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9938호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25
제9939호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44
제9940호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47
제9941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994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9943호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9944호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57
제9945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9946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9947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994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9949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9950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9951호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9952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9953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9954호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9955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995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9957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9958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995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9960호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9961호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95
제9962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9963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9964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9965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104
제9966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2
제9967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9968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9969호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122
제9970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9971호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8
제9972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9973호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	132
제9974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9975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997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9977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제9978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
제9979호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45
제9980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47
제998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9
제9982호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51
제998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54
제998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9985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9986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0
제9987호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9988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4
제9989호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	166
제9990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69
제9991호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171
제9992호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4
제9993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6

제9994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178
제9995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제9996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82
제9997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4
제9998호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
제999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9
제10000호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1
제10001호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3
제1000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95
제10003호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197
제10004호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
제10005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5
제1000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7
제10007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5
제10008호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7
제10009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20
제10010호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27
제10011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

[예 규]

제744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	236
-------	------------------------------	-----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929호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주민참여 순찰대”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순찰대를 말한다.

1. “반려견 순찰대”란 일상적 산책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2. “러닝 순찰대”란 일상적 러닝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정기 러닝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대학생 순찰대”란 소속 대학 캠퍼스와 그 인근 지역 순찰 및 신고 활동을 하는 대학생 단체를 말한다.
4. “그 밖의 순찰대”란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① 주민참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 ② 주민참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치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 정서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민이 참여하는 순찰대는 '반려견 순찰대' 외에도 '러닝 순찰대'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현행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의 근거만 있는 실정임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에 대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자치경찰사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나.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다. 주민참여 순찰대 관련 시장의 책무, 활동, 연계사업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라.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30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에 자율방범대의 송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자율방범대의 날’ 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자율방범단체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념행사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를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931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을 “사망위로금 20만원과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로 한다.

제7조제8항 중 “사망위로금 및 제7항의”를 “사망위로금 및 장례식장 이용료, 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운동,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 그 공훈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존중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생존 시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보훈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받고 사망 이후 유족의 현실적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보훈대상자가 사망시,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족이 겪는 장례 절차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훈대상자가 끝까지 예우받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 (제7조제5항)
- 나.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에 따라 지원방법 및 절차를 시장이 정하도록 함 (제7조제8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32호**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무연고 치매환자 지원
 3.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4. 한의약 등을 활용한 치매 예방 건강증진 사업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여가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2. 치매관련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3.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훈련
4. 치매관련 연구사업
5. 치매인식 개선사업
6.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원
7.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8.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후견사무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3. 책임능력·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광역치매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치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입법 경제성과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제3조)
- 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제5조)
- 다.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규정(제7조)
- 라.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33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택진흥기금에 납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5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 조성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재원 중 하나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납부하는 이익배당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두 조례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공사의 결산이익금 중 일부를 중전의 ‘시 일반회계’가 아닌 ‘주택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공사의 이익이 시민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사의 결산이익금 처리 시 납입 대상을 중전 ‘시 일반회계’에서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택진흥기금’으로 변경함(제30조제1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93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한강공원 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강공원 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2. 비상벨 및 음성통화 장비
3. 조도 확보를 위한 야간 조명시설
4.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② 제1항제1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의 시설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영장, 물놀이장 등 수변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2.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유아 이용 공간
3. 야간 이용이 잦은 산책로, 화장실 등 사각지대
4.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역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의 보호 및 열람 절차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원 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공공공간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가활동을 즐기는 복합공간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범죄 예방, 사고 대응 체계의 정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한강공원 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및 음성통화장비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시함 (제12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935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정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자치경찰사무를 협업하여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제17조의 2)

◆ 서울특별시조례 제9936호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호 및 제3호 중 "자치구청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별표 4의 2, 3호는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부여하였으나, 조례 제31조 단서는 자유표시구역광고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규정함.
- 별표 4의 해당 규정은 권한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유표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을 자치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별표 4의 2, 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937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참여실적, 횡수, 기여도 등”을 “참여실적, 횡수, 기여도 등(이하 “참여실적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에게도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전문가는”을 “전문가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직장,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는 그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 및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해 왔음.
- 그러나 현행 조례상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수행하고, 참여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와 같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해당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누락 되어 있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참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제8조, 제9조제2항)
- 나. 그 밖의 문구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9938호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공공기여”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도심, 광역중심을 말한다.
4. “대중교통 결절지”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 2개 이상의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
 - 나.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목의 범위를 초과하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6. “보류지”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조례를 따른다.

제2장 지구지정

제4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치: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면서 폭 20미터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또는 생활권의 중

십지역이 아닌 지역 중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2.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4. 영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나.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제5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치: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세권인 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은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전체가 역세권이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제11호 및 같은 조례 별표 17 제1호에 따라 공장비율 10퍼센트 미만인 지역

2. 노후도: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

3. 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

4. 영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거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자료로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2. 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지형도, 현황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적은 서류

4.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이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

제3장 복합개발계획

제8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①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환경성 검토결과(「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② 그 밖에 필요한 복합개발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 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할 것
2.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할 것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고시 예정일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것

제9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①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용,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자·규모별 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6.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입안 제안의 철회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입안 제안의 사실 등 공고해야 할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2.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⑤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예정자(사업시행예정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7조제8호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중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 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의 변경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

7. 복합개발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8.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복합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의 변경

제4장 사업시행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 제1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12조(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사항 중 영 제16조제1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영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제13조(시행규정에 포함할 사항)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중 법 제20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4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복합개발 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 검토 및 심의를 위한 도심복합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21조제8항에 의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국토계획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5.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법」에 따른 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경관법」에 따른 시장 소속의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5.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⑥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⑨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⑩ 안건의 당사자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⑪ 위원이 제9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⑫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⑤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 29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시 포함해야할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한정한다)

다. 환지에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3.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작성 시 법 제40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운영 또는 조정 결과 등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 평가 참여도
4. 법규 준수 여부
5.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중 영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중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0조 및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행규정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5장 지원 등

제19조(용도지역 조정 및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①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계획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의거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도심복합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할 경우, 공공시설의 종류, 설치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은 “복합개발계획”으로 본다.

제20조(규제특례 적용 및 공공기여 기준) ① 법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해야 하며, 건설·설치하는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프라
4.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②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란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도시기본계획 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거나, 지역의 전략적 육성 및 시 정책목표 달성 등을 위한 용도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를 개발하는 경우
2. 공연전시장의 건설 및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주변지역이나 불특정 다수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도가 높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할 시 설치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한 기금에 귀속한다.

⑤ 그 밖의 공공기여 계획 수립의 세부 기준 및 설치비용의 사용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의거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에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다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주거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100분의 50이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조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인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제2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하는 사항 중 영 제3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운영규정 및 시행규정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사업시행계획서
4. 관리처분계획서
5. 해당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6.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7.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8.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나 도면의 인계는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제17조제1호 관련)

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배점 : 20점)

-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계약 및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

- 평가건수(10점)

구 분	상위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평 점	10	8	6	4	2

- 평가금액(10점)

구 분	상위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평 점	10	8	6	4	2

2. 감정평가사 수(배점 : 15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서울시 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평가함

- 서울시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15점)

구 분	20명 초과	16~20명	11~15명	6~10명	5명 이하
평 점	15	14	13	12	11

3. 기존 평가참여 규모(배점 : 30점)

- 서울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시행일 이후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 (중진, 중후) 평가금액 및 횟수(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함

- 기 참여 평가총액(15점)

구 분	하위 20%이내	하위 20%초과~40%	하위 40%초과~60%	하위 60%초과~80%	하위 80%초과~100%
평 점	15	12	9	6	3

- 기 참여 평가횟수(15점)

구 분	하위 20%이내	하위 20%초과~40%	하위 40%초과~60%	하위 60%초과~80%	하위 80%초과~100%
평 점	15	12	9	6	3

4. 행정처분 횟수(배점 : 15점)

-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서울시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함(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횟수를 기준으로,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전책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업무정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횟수를 2배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구 분	없음	3회 이하	4~6회	7~9회	10회 이상
평 점	15	12	9	6	3

5. 평가항목 :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배점 : 10점)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의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평가에 참여한 업자의 제안가격을 평가함

구분	기준요율 평가수수료의 80%금액	감정평가업자가 제안한 수수료(금액)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의 80%초과 ~ 100%미만)	국토부고시 기준요율 적용 수수료(금액) (100%~120%)
평점	10점	평가점수 =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 제안금액) /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 50	0점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배점 : 10점)

-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예정자가 추천한 전문가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평가대상	평가항목														
	업무추진계획(25%)					인력투입계획(25%)					사후서비스 제안정도(50%)				
평 점	10	8	6	4	2	10	8	6	4	2	10	8	6	4	2

※ 시장은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안자	기관명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유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시행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시행 예정일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m ²
	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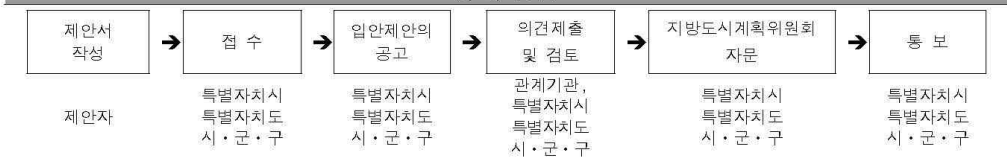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수수료 없음
----------	---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복합개발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00동 00번지 일대 제 00 호
번호부여일자	20 . . .
확인(인)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
		(계 필지)	(계)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지상권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제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동의내용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지구계)를 확인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위 치 (요청 구역)	00동 00번지 일대	지구면적	(㎡)
----------------	-------------	------	-----

상기 지구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유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혁신지구 개요	지 구 명		
	지구위치	(면적 m ²)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구성일		
해 제 동 의 사 항	① 혁신지구 지정에 동의를 토지등소유자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동의자 수 / 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

요청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00동 00번지 일대 제 00 호
번호부여일자	20 . . .
확인(인)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
		(계 필지)	(계)
		()	
		()	
	건 축 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 상 권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①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②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동의내용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지구계)를 확인하였으며, 아래 해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위 치 (해제요청 구역)	00동 00번지 일대	지구면적	(㎡)
------------------	-------------	------	-----

상기 지구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철회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등의 철회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철회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안의 철회내용	(제안 철회자 자필로 기재)	

본인은 위 제안의 철회내용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이전에 제안하였던 것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제안 철회자

(서명 또는 인)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귀하

제안 철회자 소유 토지 현황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2				
3				

첨부서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1부.

유의사항

1. 귀하(란) 앞에는 제안철회자가 철회하려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대방을 적어야 합니다.
2.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簡印)을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복합개발계획 입안 철회를 위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00동 00번지 일대 제 00 호
번호부여일자	20 . . .
확인(인)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
		(계 필지)	(계)
		()	
	건 축 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 상 권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 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①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제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②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동의내용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철회 구역의 범위(지구계)를 확인 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위 치 (요청 구역)	00동 00번지 일대	지구면적	(㎡)
----------------	-------------	------	-----

상기 지구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철회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도시공간의 복합적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2.6.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5244호, 2025.2.6. 제정, 2025.2.7. 시행)됨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규제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지구 지정 신청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4조~제7조)
- 나. 복합개발계획 내용, 제안서식 및 필요서류 명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사항, 시행계획내용, 시행규정 (제8조~제13조)
- 다.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4조 및 15조)
- 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분양신청 절차 (제16조~제18조)
- 마. 용도지역 조정관련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기준(제19조)
- 바. 규제특례관련 공공기여 기준(제20조)
- 사.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기준(제21조)
- 아.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시행규칙 마련 의무(제22조~제2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39호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행서비스”란 이동을 수반하는 일상적 활동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이동지원·안내·귀가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보조금 교부·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에 따라 동행서비스의 운영·관리를 위해 선정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행인”이란 동행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수행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동행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공받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인가구
2. 그 밖에 시장이 동행서비스의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행서비스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행서비스 세부 운영기준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사항
 4. 동행인의 자격,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행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효과적 추진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동행, 이사동행 등 시민 맞춤형 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2. 동행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동행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발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납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개인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이동을 동반하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필요한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행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병원동행, 이사동행, 마음동행 등 각종 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제2조)
- 나.시민이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시장에게 책무 부여(제3조)
- 다.1인가구 등 이동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
- 라.동행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 수립(제6조)
- 마.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40호**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증진함으로써 성평등 사회 실현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시민”이란 일 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사·돌봄노동”이란 다음 각 목의 노동을 말한다.

가. 가정 내에서 가정의 유지와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위해 수행하는 청소, 세탁, 식사준비, 가족의 정서·생활 관리 등 무급의 가사노동

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다른 사람에게 의존이 필요한 구성원을 보호·보살피는 돌봄노동(무급·비공식 형태의 노동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의 재생산을 지탱하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정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이하 “경력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경력인정서에 따른 경력인정 결과가 공공기관 및 시 산하기관 인사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4.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가치를 반영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력인정 기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도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노동·복지 전문가, 기업 대표, 경력보유시민 대표 등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사·돌봄노동은 사회 유지에 필수적임에도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력단절은 경제적 불평등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노동의 경제적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는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수행한 경력보유시민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마련함으로써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조례는 가사·돌봄노동 경력인정서 발급, 관련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권익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를 통해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력보유시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성평등 사회 실현 및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경력보유시민과 가사·돌봄노동의 의미를 정의함(제2조).
- 나.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제5조).
- 다.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
- 라.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41 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인 키움센터 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연교육을 지원”을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원”으로, “금연교육을 실시”를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를 “법 제9조의5”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는 유관 공공기관 등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를 “법 제9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인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의금연구역이 실내로 한정되어 있어,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인근 실외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화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함.
- 이에 해당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금연구역 및 홍보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아울러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높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담배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 및 제6항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 다.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신설함(제5조제1항제5호 및 6호)
-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의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제5조제1항제8호)
- 마.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제8조제1항)
- 바.서울시교육청과 학교 내 금연구역 및 홍보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4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우 및” 을 “처우를 개선하고” 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과다와 현장에서 겪는 언어·물리적 폭력, 인권침해 등에 의해 심각한 소진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 유지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의 구체적 범위를 제한적으로 명시한 기존 목적 규정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제8조제1항제7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43호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생이모작”이란”을 ““생애재설계”란”으로, “및 성공적”을 “와 안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인생이모작을”을 “생애재설계를”로 한다.

제3조 중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 생애재설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강증진”을 “경력설계 상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5.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6.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지원사업
7. 중장년층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사업
8.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제6조의 제목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인생이모작”을 각각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5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인생이모작”을 각각 “생애재설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생애재설계’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중장년층의 경력설계, 건강증진,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확대·보완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으로 명시함(제1조).

다. 각 조항에 “인생이모작”이라는 용어를 “생애재설계”로 일괄 변경함.

라.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 생애재설계”로 변경하고, 맞춤형 취업훈련, 커뮤니티 활동 등 신규 지원사업을 신설함(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44호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 안전한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5조(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시민의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추진 등) 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픽시(Fixed Gear) 자전거’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큼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만으로는 픽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 및 초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픽시 자전거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교육과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가.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나.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의무를 규정함(제3조)
- 다.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함(제5조)
- 마.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바.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을 규정함(제7조)
- 사.픽시 자전거 이용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규정함(제8조)
- 아.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9조)
- 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45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2.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전용구역에 대한 정보구축 및 유지관리
3.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전용구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에 따라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시장이 중점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46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현 예산정책위원회 임기 만료 후 구성될 차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제11대 의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임
- 현행 조례에는 위원 임기와 의원 임기가 불일치되는 사항과 관련한 지침 조항이 없어 외부 위원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혼란이 예상됨
- 이에, 의원 임기 만료 시 위원 임기도 자동 만료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촉 당시 의원 임기 만료 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를 자동 만료되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47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어린이 안전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교통안전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아동 유괴 및 유인 사건으로 전국민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 1,084건 중 60% 넘는 사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됨.
-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시장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94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 중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 1) 서울도심 외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
- 2) 서울도심 지역은 서울도심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 외 용적률의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제56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을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구성된 분과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성 분과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 5와 별표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1) 전단 중 “2천제곱미터”를 “4천제곱미터”로 하고, 후단 중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를 “다만,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및 주변의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거나,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전단 중 “3천제곱미터”를 “5천제곱미터”로 하고, 후단 중 “다만, 음식점

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및 주변의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거나,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6 제8호 중 “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 너비 12미터까지 완화할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1조제2항제1호사목 규정은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 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으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도시계획위원회로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합(25.7)함에 따라 도시재생 위원회는 도시계획 위원회 2분과 위원회로 개편. 이에 심도있고 신속한 심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고정된 위원을 두지 않고 개최 시 상정 안전에 따라 해당 안전을 가장 잘 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연장과 집회장의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도시 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며 K-콘텐츠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건설경기 침체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신규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개발여건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을 12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서 관광특화 목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1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제51조제2항제1호다목)
- 나. 상업지역 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서울 도심과 비도심의 구분 없이 용적률을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2029년 1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제51조제2항제1호사목)
- 다. 시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 구성 방법 및 회의자료 배포 절차 등을 규정함 (제56조제2항 및 제4항)
- 라. 구성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한 분과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제56조제5항)
- 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과 집회장의 설치가 가능한 최대 바닥면적을 기존 2천제곱미터 미만에서 4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청장이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완화할 수 있음 (별표 5 제3호나목1)
- 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과 집회장의 설치가 가능한 최대 바닥면적을 기존 3천제곱미터 미만에서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를 완화할 수 있음 (별표 6 제2호가목)
- 사.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오피스텔에 대해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접도 조건을 기존 20미터 이상에서 12미터 이상(안 별표 6 제8호)으로 완화할 수 있음 (별표 6 제8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949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10조를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에”를 “중에서”로 하며,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등)”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된”을 “위촉한”으로,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새로이 시작한다”로 하며, 제12조를 제8조로 한다.

제13조를 제9조로 하고, 제14조의 제목 중 “(위원회 운영)”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며, 제3항부터 제7항을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

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하고, 제15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며, 제17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융합되는 디지털 전환의 필수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 및 정부 차원에서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본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클라우드 산업의 기반 조성 and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그 외 자치법규의 체계와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문장 구성 등 기술적인 요소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시민이 자치법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정의함(제2조제5호 신설).
- 나.중소기업 지원사항 중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지원을 규정함(제15조제4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50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60일 전부터 7일” 을 “90일 전부터 5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광화문광장은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시민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대표 광장임.
- 최근 행사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주최측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확대해 행사 주최 측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과 시민 홍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51호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60일 전부터 7일” 을 “90일 전부터 5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세운광장은 도심 속에서 시민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민활동 거점임.
- 행사 규모 확대와 운영 다양화로 주최 측의 행사 기획·협의·안전관리 등 사전 준비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에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확대해 주최 측의 준비와 안전관리 여건을 강화하고, 광장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세운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52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시민편의 시설 운영)”을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가치공유와 홍보를 위해 열람·전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를 “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요 기록물의 전시 및 관련 콘텐츠 구축
2.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기록물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12년부터 서울도서관 내에 ‘서울기록문화관’을 설치·운영해왔으나, 서울도서관 공간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이 2025년 9월30일자로 운영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항을 삭제하고,
- ‘서울기록문화관’의 관련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전하여 전시·견학·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대한 안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기록문화관의 각 호의 업무를 서울기록원으로 이전하고, 전시·교육·체험 등 구체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명시하여 안정적 추진근거를 마련함(제11조).
- 나. 서울기록문화관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2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53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구성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하안전의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이 중요함에도 현행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수립 항목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계획수립 항목에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2항제6호).

나. “재적위원”을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구성위원”으로 변경함(제8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54호**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임신”을 “임신, 다자녀(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장애인 관광활동지원)”을 “(관광약자 관광활동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의 여행”을 “관광약자의 여행”으로, “장애인의 관광”을 “관광약자의 관광”으로, “장애인 관광”을 “관광약자 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보 제공과 원활한 접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 시장은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관광약자의 실질적 관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관광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 서울시는 관광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약자의 관광 접근성 향상과 시행 사업의 정기평가 및 결과 공개 등 현행 조례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광복지 향상과 포용적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관광진흥법」 상 관광 활동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가 추가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다자녀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약자에 다자녀를 추가함(제2조제2호).
- 나.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4호).
- 다. 관광지원기본계획에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제4조제1항제6호).
- 라. 관광활동지원 대상을 관광약자로 확대함(제5조).
- 마. 시장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함(제5조제3항).
- 바. 관광약자의 실질적인 관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무장애 관광지·관광상품·관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함(제5조의2제2항).
- 사. 시장으로 하여금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55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 중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을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를 삭제하여 해당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 등을 삭제함(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5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대상, 용적률 적용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자치구의 구금고 또는 시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자치구로 이원화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함.
- 기부채납 형태의 다양한 공공시설 수요 증가로 조성비용 예치대상을 일반 기반시설로 확대하고, 실질적 집행 주체가 조성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 뿐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세입자 추가 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추가보상금에 상응하는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기반시설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제11조제1항)
- 나. 모든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제11조제2항)
- 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정함(제27조제3항)
- 라. 조성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정비기반시설에서 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예치기관을 구금고 뿐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57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그 사업 효과를 지속
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그 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제24조의2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58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또는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2.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고 있으나,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교통안전 문화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술에 취한 상태와 과로 질병, 약물 복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함(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5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업성 보정계수”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시행구역에 대해
지가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량 및 용적률 완화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제44조의4제3항 중 “30”을 “15”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적률의 상한(%) = $a + b + c + (\text{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 비율} \times 100(\%) \times \alpha \times \beta)$

α (적용계수) : 2.5(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β (사업성 보정계수) :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c : 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25
퍼센트 이내)

제50조제5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적률의 상한(%) = $a + (\text{임대주택 비율} \times b \times \beta)$

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 전체 계획용적률(%)

β (사업성 보정계수) :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의2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비율산정 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하여 용적률 완화 등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량이 과다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개념을 도입하고 적용토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한편, 지난 24년 11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이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준주거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 적용계수를 신설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성 보정계수 정의 신설(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 나.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함(제44조의4제3항)
- 다.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근거 마련(제44조의4제4항)
- 라. 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근거 마련 및 준주거지역 적용계수 신설(제50조제1항제2호)
- 마. 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근거 마련(제50조의2제7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60호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따라, ' 25. 9월 서울특별시의회는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용자 등의 지원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음
- 그럼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서울시가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시장이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6조의2제1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961호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개선계획 수립 등)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2. 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세부 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운용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 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 일관된 방식으로 지역 자치단체의 교통 혁신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서울은 인구 밀집도와 교통 수요가 높은 대도시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임.
- 따라서 모빌리티 지원법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특성과 교통수요에 맞는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시장의 책무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예산의 확보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자 함
- 다. 모빌리티혁신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현황조사 실시 및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방향을 규정하고자 함
- 라.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마. 모빌리티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마련 및 모빌리티 특화 도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962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법 제7조제4항” 을 “법 제7조제5항” 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100분의 1.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도록 확대됨(이전 1%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1%)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100분 1 이상에서 100분의 1.1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제6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63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사 시 작업자 및 보행자, 운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등 신기술의 적용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기존 조례는 도로상 공사 시행 시 안전을 위해 표지판·신호수 등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작업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 신기술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도로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 자동화 등 최신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공사 시 작업자나 보행자, 운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무인,자동화 등 신기술의 적용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64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률상담 지원사업

제18조의 제목 “(2차 피해 방지)”를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여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까지 보복·스토킹 등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이에 피해자와 종사자의 신변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규정함(제14조의3제7호).
- 나.제18조의 제목을 “2차 피해 방지” 에서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로 변경함(제18조).
- 다.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18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65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칭, 휘장 등 의회 상징물 전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 대상)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 관련 업무 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행사
3.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성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2. 단순한 공연성 행사
3.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4. 안전관리·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사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단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다)
3. 신청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의장 명의의 상장수여(이하 “상장수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수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단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목적, 내용 및 규모
 3. 신청단체의 설립목적, 운영현황, 행사개최의 역량
 4. 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대한 후원요청 여부와 결과
 5. 상장수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 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후원명칭 사용신청 및 상장수여 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의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의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부서장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간사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의장은 신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신청단체에 대하여는 취소 의결일 기준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기간 동안 승인사항의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신청단체가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단체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신청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승인관리 등)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의장은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안전관리·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후원기관 명칭 사용신청은 승인 불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 기관·단체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담 당 자 연 락 처	진 화			
		팩 스			
	E - m a i l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행 사 주 최					
행 사 주 관					
요 청 내 용		☐ 후원명칭 승인 ☐ 상장			
요 청 사 유					
후 원 예 정 기 관 · 단 체 명					
행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 사 장 소					
참 석 대 상			참 석 인 원 (추 정)	명	
위 행사에 대한 귀 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제출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1부. 2.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조직, 연혁, 인력현황, 사업 등) 1부. 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상장 요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별지 제2호서식) 1부.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상장수여 신청서

☐ 신청내용

상 장 매 수	○매
발 급 방 법	☐ 수상자 성명 기재 ☐ 수상자 성명 미기재(성명란 공란)

☐ 심사계획

심 사 방 법	(예시)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내부, 외부인사 구분) - 심사절차(예선, 본선) - 심사기준(예선, 본선) - 수상자결정방법(순위 및 점수)
시 상 계 획	(예시) - 대통령 표창 - ○명 - 서울시의장상 - ○명 - 서울시장상 - ○명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제출

※ 상장에 수상자 성명 기재 희망 시, 수상자 결정 후 다음 양식에 따라 수상자 인적사항 제출

연번	이름	소속	직위(직업)	생년월일	비고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행사결과보고서

☐ 행사개요

행 사 명	※ 행사결과보고서는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주 최	
주 관	
일 시	
장 소	
참 여 인 원	
후 원 받 은 내 용 (타기관 후원명칭 사용 포함)	

☐ 상장수여 내역

연번	이름	소속	직위(직업)	생년월일	비고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우수상

☐ 행사결과

- 행사홍보 또는 안내방법(사본첨부)
- 행사진행 경과, 참석자 내역 등
- 시상내역(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시장상 등)
-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 행사사진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연번	주최/주관 기관 또는 단체	행사명	일시	장소	승인사유	비고
1						
2						
3						

후원명칭 사용 불승인 관리대장

연번	주최/주관 기관 또는 단체	행사명	일시	장소	불승인사유	비고
1						
2						
3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최근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각종 행사 추진 시 서울특별시의회의명칭 또는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승인절차나 관리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사용과 상업적 이용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서울특별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여 명칭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후원명칭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용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함(제2조).
- 다.승인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여 공익적 행사 중심으로 후원명칭이 사용되도록 함(제3조).
- 라.신청 절차, 제출서류 및 보완요청 등 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제4조).
- 마.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여부를 심사·의결하도록 함(제6조).
- 바.승인취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함(제7조~제9조).
- 사.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의 공개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제10조~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66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미래인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가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미래인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와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 전문학교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미래인재"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그와 관련한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미래인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인재의 진로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대상) ① 재단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청년
 3.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특정 분야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은 500억원으로 한다.
- ③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인사로 한다.

1.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인재 양성 또는 청년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2. 교육·산업·과학기술·문화·복지 등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시장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 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산 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타목 중 “서울장학재단” 을 “서울미래인재재단” 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층 및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다만,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중심의 종합적인 인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재단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장학 지원외에도 진로 개발, 취업 역량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사업을 추진하도록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재단의 목적을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재성장 시스템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명칭을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함(제명, 제1조).
- 나.지원대상을 학생·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 미래인재를 새롭게 정의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함(제2조, 제6조).
- 다.사업의 주된 범위를 진로개발취업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학생과 청년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함(제5조).
- 라.재단 기능 강화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자구 일부 정비함(제6조).
- 마.재단 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67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으로, “건설”을 “건설 또는 매입”으로 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특화주택) ①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주택(이하 “특화주택”이라 한다)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자격, 선정기준, 거주기간, 입주자 및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수요자맞춤형주택)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1. 중장년 1인 가구
2. 예술인 가구
3. 한부모가족
4. 홀몸어르신 가구
5. 유공자 가구
6. 창업 1인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입주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격 요건 등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을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공주택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상 근거를 명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에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공급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입주자를 별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맞춤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화주택’의 공급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제8조의5).
-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맞춤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8조의6).

◆ 서울특별시조례 제9968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 · 사용하고 기존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는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는 그 구체적 내용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 계약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공유재산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합리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신설(제23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969호**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공기관등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보급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기념행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여전히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여 정보 접근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 제2조)

나.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제4조)

다.시행계획, 실태조사, 보급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5조~제7조)

라.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70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관리하는”을 “조성·관리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청이 심의위원회 안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3조제6호 본문 중 “방제시에는”을 “방제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20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보호 할”을 “보호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도로표지판 등 설치)”를 “(조성·관리 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를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1” 을 “별표 1”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 를 “제14조” 로,
“ 「산림조합법」 제108조” 를 “ 「산림조합법」 제108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수목을 반입·반출하고 있는데, 환경여건에 따라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도로변 공사, 도로표지판 등 도로관리청과 조성·관리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청이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제10조제2항 신설)
- 나. 「도로법」 및 도로 시설과 관련하여 조성·관리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71 호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성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주기, 안전성 개선조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첫째,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승강기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 둘째, 시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성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승강기 이용환경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신설(제4조제1항제7호)
- 나. 시장이 법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하며 세부사항은 고시토록 함(제4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972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 제1항 제5호는 서울특별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때 ‘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출연 동의 절차는 본예산 편성에 앞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단계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내용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복 검토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절차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동의안 제출 시점과 예산안 심의 시점의 차이로 인해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출연 규모가 변동될 경우, 사전 동의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출연 동의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등 정책적판단에 집중하고,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와 산출내역의 적정성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하여 의회심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출자·출연 동의안에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삭제함 (제22조의4제1항 제5호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9973호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 협력체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 협력체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기관, 출연·출자기관, 자치구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 개최되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문화행사 관련 기관·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사”란 서울특별시, 그 소속 기관, 출연·출자기관 또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행사를 말한다.
2. “정보공유·협력체계”란 문화행사에 관한 일정, 장소, 주제, 예산 등 주요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상호 협의·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체계를 말한다.
3. “중복개최”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유사한 주제의 문화행사가 중복되어 예산·인력·관람객이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화행사에 적용한다.

-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③ 자치구,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유와 협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행사의 사전 등록 및 정보공유를 권장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⑤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중복개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일정·주제 등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 ② 시 본청, 사업소, 출연·출자기관 및 자치구는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 일정·장소·내용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등록·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중복개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를 권장할 수 있다.
- ④ 등록·통보·협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협력협의회) ① 시장은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협력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 방향
2. 중복개최 예방 및 자원공유 활성화 방안
3.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자원공유 및 협력지원)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홍보자원 등을 기관 간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공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공유 또는 공동행사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공시설 대관 시 우선권 부여, 홍보 지원, 공모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중복개최 우려 행사를 협의하여 공동 또는 통합행사로 전환하는 경우, 시장은 기획·홍보·장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자원공유 및 협력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보공유 실적 및 이용 현황
2. 중복개최 감소 및 협력 사례의 성과
3. 자원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
4. 민간단체 참여 및 시민 만족도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문화행사 관련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시와 자치구, 출연·출자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되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중복개최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 중복개최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나.시장이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다.문화행사 계획의 사전등록 및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함(제4조).
- 라.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74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사람”을 “사람(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제3항은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6개소의 서울시립박물관은 모두 보조건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관람 제한 대상으로 정하면서, 장애인 보조건의 경우에 대한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조건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오인될 여지가 있는바, 장애인 보조건의 경우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보조건의 경우 동반출입을 허용함(제7조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975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시행 중이며, 이 중 제4조제3항은 민간위원을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을 위해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던바(2023. 12.18. 의결) 해당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은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7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로 한다.

제3조 중 “위탁사무에”를 “민간위탁 사무에”로 한다.

제4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별로 내부위임, 외부위임 및 공공위탁, 민간위탁, 제3자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위탁기관장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할 경우에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을 근거로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위임 및 공공위탁의 근거까지 포괄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종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대행 등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이 종료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였으므로 민간위탁을 종료할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제1조 및 제3조).
- 나. 시장이 민간위탁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4조의3제6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77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을 “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 “시장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면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2024년 12월 개정되어 2025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따르는 조례도 발맞춰 보완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기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보고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시장에게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함.(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78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속가능 관광”이란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관광객에게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강화하고”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속가능 관광 육성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관광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2019년 기준 약 10.5%을 차지하는 등 상당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음.
- 이에 기후위기 등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광산업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기에 최근 3·3·7·7 정책으로 외래 관광객을 증가시키려는 서울 시도 친환경 관광에 대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제9호).
- 나.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제4조제3항).
- 다.지속가능 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제15조제1항제1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979호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의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신설(제45조 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80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공공박물관 및 공공미술관은 한 지역의 문화·지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나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 공공문화시설의 불균형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구 간 문화향유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규정 추가(제3조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8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심의위원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중신제’ 처럼 운영되고 있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 고착화 및 소위 ‘카르텔’ 형성의 문제가 지적되어왔음.
- 이에 조례 내에 심의위원의 임기를 따로 명시하여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공모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82호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
3. “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인공지능 수어번역”이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수어번역 기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기반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권리·욕구·연령·기술격차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5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 및 복지지원
2. 공공·의료·법률·교육기관 및 재난현장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출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3.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
4. 청각·언어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수어 교육 및 권익옹호 교육
5.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센터 운영 등 문화·심리·정서적 지원
6. 수어통역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 ① 각 센터에는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계획, 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정보제공, 문화·정서·심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 및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청각·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와 급변하는 디지털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장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른 기능 및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센터 운영 일반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 나.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함.(제4조)
- 다.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함.(제5조)
- 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마.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바.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8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다목3) 중 “30실” 을 “50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오피스텔 수요가 확대되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오피스텔의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규정상 30실 이상 오피스텔도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소규모 사업까지 불필요한 절차와 인허가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심의대상 기준을 ‘오피스텔 50실 이상’ 으로 조정함으로써,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오피스텔 관련 기준을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 에서 ‘오피스텔 50실 이상’ 으로 완화함. (제7조제1항제2호다목3)

◆ 서울특별시조례 제998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 따라”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독을 예방하기”를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홍보”를 “교육·상담·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치료 관련”으로 한다.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연구

제14조의3을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교육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생활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지만 청소년 유해 요소가 다양화되어 현장 중심의 감시와 개선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감시단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용어의 약칭을 규정하여 조문을 정비함(제7조, 제14조의3, 제19조).
- 다.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내용을 규정함(제14조의2).
- 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4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9985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천 및 공원 등 시민 여가·녹지 공간과 연계하여 경관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5.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선 구분 및 분리 설계 방안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자전거 전자지도 구축)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활용한 ICT 기반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장이 자전거도로 전자지도와 이를 활용한 안내시스템을 구축·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 및 공원 등 시민여가 공간과 연계하는 설치 방안과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조성 시 보행자 동선과 분리하는 설계방안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활용한 ICT 기반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3 신설)
- 나. 자전거도로 설치 시 기존 도시개발 중심의 설치 기준 외에, 하천 및 공원 등 시민 여가·녹지 공간과 연계하여 경관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설치 방안을 추가함(제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선 구분 및 분리 설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86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절차의 간소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예약시스템 이용” 을 “시민 불편 및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예약시스템 이용” 으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약시스템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부정 이용 방지 기능 관리 및 개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영성과 공개)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운영성과 및 부정 이용 방지 조치 결과, 시민 불편 처리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은 시민이 체육시설, 문화강좌 등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지만,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으로 공정성 훼손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서울시는 매크로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 접속을 차단하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했으나,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이에 시장의 책무에 부정 이용 방지 및 이용절차 간소화 시책을 명시하고, 실태조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시장의 책무에 부정 이용 방지 및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추가함(제3조제3항 신설).
- 나.시민 불편 및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함(제4조).
- 다.예약시스템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부정 이용 방지 기능 관리 및 개선사업을 추가함(제6조제4호 신설).
- 라.예약시스템 운영성과 및 부정 이용 방지 조치 결과, 시민 불편 처리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6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87호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등의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 을 “등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 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사무처장은 「도서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 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질서유지) 이용자는 도서관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은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의 전문정보 접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시민 접근성과 정보공유 측면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
- 현행 조례는 이용 대상을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또한, 「도서관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내용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추진의 근거가 부족함.
- 아울러, 도서관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서 유지 조항이 부재하여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서, 온라인 열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영리 목적의 시민 이용을 허용하며,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도서관의 공공성과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5조제3항 신설).
- 나.도서관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비영리 목적의 시민 이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함 (제8조제4호 개정).
- 다.「도서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기념행사 및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3조의2 신설).
- 라.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이용 제한 근거를 명문화(제14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88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의 경우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

제1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제10호의 적용은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서울윈터페스타’ 등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 축제 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주도의 다양한 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최근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와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양적 성장에 따라 국내외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질적 성장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임.
- 또한, 도심의 주요 공간을 활용한 축제가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파 관리, 교통 통제, 시설 안전 등 안전관리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제16조에 민간축제 반복지원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제18조에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는 교통 관리 대책의 적정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특정 단체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제16조제5항)
- 나.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평가 항목에 교통 관리 대책의 적정성을 추가(제18조제3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89호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예술인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기초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2. 예술인의 기초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
4.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5.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초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초예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초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예술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현재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초예술은 상업예술이나 대중예술의 토대가 되는 핵심 기반 예술로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제4조)
- 나.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5조)
- 다.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90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서울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자료를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관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증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
3. 그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공도서관에서는 해마다 상당한 양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재활용이나 기증 근거가 미비하여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고 있으며, 서울도서관 또한 지난 5년간 46,800 여권의 일반도서와 간행물을 폐기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도서관장이 보관 상태가 양호한 폐기 도서를 기관이나 시민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 자원의 선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증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21조제3항).
- 나. 서울도서관장이 폐기 대상 자료나 그 밖의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991호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의 노동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

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원 마련)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8조의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 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등 사용자에게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노동권익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규정(제1조~제3조)
- 나.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다.계약연장 지원사업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등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제5조)
- 라.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마.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7조)
- 바.고용안정 및 보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8조)
- 사.관련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92호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4.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6.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분포와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무분별한 개발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생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태계교란 생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유형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사업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정의 규정(제2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규정(제6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993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본 조례 제18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시행 (2025.9.29.)된바,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 조항 삭제(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94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시 내 노후화된 지상철도 구간은 구조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지하철 1, 2호선 등 도시기반 교통시설 지하화 등의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기금의 용도를 지상 또는 지하철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 사업으로 확대(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95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건설산업중사자 중 외국인건설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전반에 외국인건설근로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장의 외국인건설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지원과 함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사업장의 외국인건설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9조의2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996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가속·급출발 등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에 부착 가능한 안전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며, 나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전체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1항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997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분양 또는 임대)·운영 및 관리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정비·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사업
 -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 다. 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동산 개발업
 - 라.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마. 도시재생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시장정비사업
 - 바.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물류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물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택 및 건축물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분양 또는 임대)·운영 및 관리
 - 나. 주민 재정착 및 창업지원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개량·매입·공급(분양 또는 임대)·운영 및 관리
 - 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주거복지사업
5.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 나. 주차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운영 및 관리
 - 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마. 관광사업의 개발·조성·운영 및 관리
 - 바. 도심항공교통(UAM)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
 - 사. 방송통신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6.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7.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감리 등) 및 업무(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 등)
-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설립 이래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을 주요 임무로 수행해 왔으나, 최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제고 등 정책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25년 7월 사명을 변경한 바, 공사의 사업 범위를 재정비하여 변화하는 환경 및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 조례는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나타남.
-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 유형에 따라 세부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의 범위에 신규사업(노인복지시설사업, 민간투자사업, 체육시설사업, 관광사업,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사업, 방송통신시설 등)을 추가함(제21조제4호 및 제5호).
- 나. 사업유형에 따라 조항체계를 정비함(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98호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해야한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 지역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5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산림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 사업
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성에 기반한 산림교육 활성화 등의 지원을 위해, 산림교육지원계획에 포함 사항 규정, 산림교육 지원인력 및 예산 지원 범위 명시 등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산림교육지역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제4조)

나.산림교육 사업추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제5조)

다.산림교육의 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시함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99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단의 개발·보급”을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항”을 “사항 및 정당한 편의 지원”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신체,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에 의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의사소통 장애인의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축 사업 지원 및 정당한 편의 지원 근거 마련은 물론, 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학부모,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2. 주요내용

- 가.조례 상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제2조)
- 나.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및 정의상 규정한 정당한 편의 지원 조항 규정 (제8조)
- 다.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00호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성하고 확산하는데”를 “조성 및 확산하고 부패행위 방지에”로, “서울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신뢰를 확보하는”을 “신뢰 확보 및 권익을 보호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을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하 “의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청렴마일리지 제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렴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청렴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등 청렴 활동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의 청렴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렴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함.
- 또한, 형식적, 선언적 의미의 정책 대신, 직원들의 자발적,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청렴마일리지 제도’ 등을 규정하여 청렴한 업무처리 및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의 신뢰 확보뿐만 아니라, 권익 보호 구축 등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목적에서 공직자의 부패방지 강조 및 시민의 권익 보호 규정 (제1조)
- 나.청렴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8조의2)
- 다.기타 용어 상 자구수정 (제3조 및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01호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본 조례는 문자해독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서울시민이 문자해독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은 물론 공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표창 근거 마련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0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을 “시민의 생활안정과 심리회복 및 재난 복구를”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한다” 를 “하며,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기간에 제한 없이 심리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직후부터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발생하는 대규모 사회 재난은 과거의 물리적 피해 복구 및 응급구조 중심의 대응을 넘어, 재난이 남기는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후유증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명 및 재산 손실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며, 궁극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물리적 수습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로 인해 재난 수습 이후의 장기적인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재난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명확히 '시의 책무'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심리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기간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시장이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치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03호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시책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재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해외인재”란 다음 각 목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나.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와 산업계의 책무) 사업자와 관련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혁신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첨단산업 및 위기업종 인재확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① 시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서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기관
- 제8조(위기업종 인재확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학금 지원
 2.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3. 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지원
 4. 청년·여성·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교육·의료·거주 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
- ② 시장은 인재 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시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에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 소재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여성인재 양성·활용 지원) 시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여성인재의 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 제공
 2.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경력 관리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 지원) 시장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지원) 시장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 인재 유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2025년 1월 17일부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발효되어 기존의 국가 주도 인재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계가 주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인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주요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고급 인재가 밀집된 핵심 지역으로서, 이 특별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이 위임한 권한과 책무를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시책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재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 (제6조)
- 나.기업인재개발기관 등 지원(제7조)
- 다.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제8조)
- 라.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제9조)
- 마.청년·여성인재 양성·활용 지원(제10조)
- 바.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 지원(제11조)
- 사.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지원(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04호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표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5. “그린바이오소재”란 그린바이오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그린바이오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방안
5.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6.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및 창업 지원) 시장은 그린바이오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제공
3. 경영 상담 및 법률 컨설팅 지원
4. 제품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5.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지구에 있거나 육성지구로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신소재 개발 등으로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2024.1.2.).
-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고성장·고부가가치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촉진, 창업 지원 및 기업 육성,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실태조사 및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마.그린바이오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05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8조제9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9.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소비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 등 근무시간이 유연하고 보상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면서 구인난 극복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 매장에서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 무인화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
- 하지만, 영세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장이 협소하고 자금 및 디지털 역량의 부족 등으로 무인화 기술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구직 방법도 온라인 채용 방식보다는 주변의 소개, 사설 직업소개소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구인과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실시함(제8조, 제9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0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 을 “시설로 「청소
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및 「지방자치법」”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를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 을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비숙박시설 :” 을 “비숙박시설:”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숙박시설
:” 을 “숙박시설:” 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
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13세” 를 “9세” 로, “경우
: 월 사용료” 를 “경우: 월 사용료의” 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우:” 를 “경우:” 로 하
며, 같은 항 제9호 중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으로,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 를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시설의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설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거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동의를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서북)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서남)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북)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남)	"	
	용산구	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만리재로 156-1
	강북구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한천로 140길 5-26
	중랑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송림길 156
	은평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통일로 92길 37-6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	시루봉로 15길 93 외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영신로 200
	양천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포함)	남부순환로54길 37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여의대방로 20길 33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길음로7길 20
3의3. 기타 청소년 시설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여의대방로20길 33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구분	대 상	1회(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청소년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유아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청소년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유아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청소년 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 장 등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 고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 습 및 이용의 경우임								
비 고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비 고	1)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 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비 고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 인할 수 있다.								
비 고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비 고	1) 성인 : 25세 이상								
	2) 청소년 : 9~24세								
비 고	3) 유아 : 8세 이하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시설 이용수업	성인	31,000	43,000	56,000	68,000	81,000	93,000	
	청소년 이하	25,000	37,000	50,000	62,000	72,000	80,000	
외국어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청소년 이하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예체능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118,000	
	청소년 이하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취미·교양 문화 등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84,000	
	청소년 이하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72,000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 비 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 4) 기타 취미·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성인 : 25세 이상
 - 2) 청소년 : 9~24세
 - 3) 유아 : 8세 이하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	청소년		성인		비 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인실	침대(1 bed)	50,000	52,000	52,000	54,000	
	객실(1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객실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객실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객실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객실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객실	160,000	180,000	180,000	200,000	
가족실	콘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씩 별도 요금 부과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 1일 기준)

구분	수용인원	이 용 료		비 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명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명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명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명	400,000	200,000	
분임회의실	20명	200,000	100,000	
비 고	1. 이용료 할인 : 금, 토, 공휴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별표 1 시립청소년시설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며,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및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해 별표 2의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 추가(제2조)
- 나.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13세 → 9세)(제8조제2항제7호)
- 다.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제8조제2항제9호)
- 라. 청소년시설의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
- 마.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한 용어 개선(별표 2)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07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6년 1월 5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후단 중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2조의2”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AI·SW융합교육원

7. 스포츠건강진흥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AISW융합교육원 신설(제7조제1항제5호)
 - － 첨단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마련
- 나.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폐지(제7조제1항제5호)
 - － 사회공헌 기능을 ‘기획처’ 산하 ‘대외협력과’ 로 이관하여 대외협력 기능과의 연계성 및 실행력 강화
- 다. 체육관 명칭을 스포츠건강진흥원으로 변경(제7조제1항제7호)
 - － 건강·체육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08호**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라 함은”을 ““공공보건의료”란”으로, “‘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을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망병원”이라 함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장이”를 ““안전망병원”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4.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5. “의료비 융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융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

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적기 치료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료비 및 의료비 용자 이자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4호~제5호)
- 나.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09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체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례·규칙 등”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과 그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시적 규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규칙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심사

제5조(규제의 심사) ① 시장은 조례·규칙 등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 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 등)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 처리 결과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제의 정비 등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및 기준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 정비의 요청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 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 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정비 요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행정 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① 시장은 신산업·민생분야와 관련된 규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되, 해당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특례 관계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안전·생명·건강에 대한 위해 여부, 환경 피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산업·민생분야의 혁신성·안전성 및 그에 따른 이용자 편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범 운영기간 등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1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규제총괄관, 규제개혁 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1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맡는다.

제19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총괄관

제20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25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과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범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기업·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개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로 변경함
- 나. 조문의 구성을 당초 18조에서 6장 및 26조로 세분화하여 조문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함
- 다. 시장의 ‘규제개혁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범주의 규제를 개선할 책무 등을 명시함 (제3조)
- 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함 (제7조)
- 마. 시민·단체·공무원 등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의 요청 등’ 조항을 신설함 (제9조)
- 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개혁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함 (제10조)
- 사. ‘공무원의 책임 등’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를 명문화하여 공무원에게 규제개혁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제2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10호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지원 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해촉 및 제적·기피·회피 등 그 밖에 협의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시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4.3.26.) 및 시행(' 26.3.27.)에 앞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돌봄 통합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1조~제3조)
- 나. 시장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 의무(제4조)
- 다. 통합지원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
- 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6조~제11조)
- 마.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정(제12조~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11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를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관 부서장이 된다”를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세부 운영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나.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⑬ 영상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를 “시에”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상영관 관람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6.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 수강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가. 영화 감독,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다.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영화센터의 위치(제9조제3항 관련)

이름	주소
서울영화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

[별표 2]

상영관 관람료 부과기준 (제9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관람료 부과기준
• 상영관 관람료	개인: 5,000원 ~ 15,000원
	단체(10인 이상):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산업 지원시설로서 서울영화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위치 규정
- 나. 영상산업 지원시설 상영관 관람료 및 그 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
- 다. 영상진흥위원회 관련 위원회 필수 규정 사항 정비

[예 규]**◆ 서울특별시에규 제744호****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6조 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 제13조 제2항”을 “영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의 운영·소집·개최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장으로, 서기는 자치경찰총괄팀장”을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 제7조 제1항”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 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지 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단서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

25조 제2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 제3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5조 제4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법 제25조 제5항”을 “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법제26조 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 및 조례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제8조 제3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영 제13조 제4항”을 “영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제9조 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사항과”를 “대상 정보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 제3항, 영 제16조”를 “법 제26조제3항”으로, “조례 11조”를 “제16조, 조례 제11조”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참석수당 :”을 “참석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심사수당 :”을 “심사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의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참석수당

구분	단위	기준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 기본료 : 150,000원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화상회의	회당	· 기본료 : 150,000원 · 초과 : 50,000원	

2. 심사수당(서면의결 수당 포함)은 안건당 5만원으로 하되, 1일 150,000원을 넘지 않는다.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은 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개편('25. 7. 1.)에 따른 기존 부서명 삭제 및 위원회 서면의결 대상 삭제 등 운영세칙 현행화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의 간사 및 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제4조제1항)

나. 위원회 서면의결 대상 삭제(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 약칭 수정, 띄어쓰기 수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